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1년 12월 일
제 출 자 : 배재만, 전수곤, 김영래
구교강, 김성우, 도희재, 황숙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행정안전부 제17893호, 2022.1.13. 시행)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 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변경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 목적: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제51조로 변경
- 범위: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변경

3. 조 례 안 : 붙 임

4. 입법예고기간 : 2021. 12. 17. ~ 12. 21.

5.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를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를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1조---------- ---------- ---------- ---------- -------.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	제2조(범위)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